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24

발의연월일: 2020. 7. 14.

발 의 자:노웅래・윤재갑・최종윤

권인숙 • 우원식 • 오영훈

고영인 • 이용빈 • 유정주

조오섭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임금채권보장제도는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로 그 지급 요건을 제한하고 있어 저임금 근로자가 임금 체불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더라도 이를 구제받기 어려운 상황임.

한편,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등인 체당금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가 3년으로 짧아,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과정에서 행정비용이 낭비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저임금 근로자가 재직 중에도 임금체불로부터 구제받을 수 있 도록 체당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체당금 반환권 등의 소멸시효를 5 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9조 등). 법률 제 호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금채권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못하고 퇴직한"을 "못한"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체불 임금등의 지급)"을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체불임금등의 지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근로자"를 "퇴직한 근로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종전의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중 "근로자"를 각각 "퇴직한 근로자"로 한다.

④ 재직 중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체당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퇴직 이후 같은 근무기간 또는 같은 휴업기간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체당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재직 중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하고 제1항에 따른 체당금을 지급한다.

제7조의2를 제7조의3으로 하고,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7조의2(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한 체불 임금등의 지급) ① 고용노동 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7조제1항에 따라 체당급을 지급한다.
 - 1. 사업주와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아니한 근로자(이하 "재직근로자"

라 한다)일 것

- 2. 재직근로자의 임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 3. 사업주가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② 제1항에 따른 재직근로자에 대한 체당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각 호의 금액은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
- 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
- 2.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
- ③ 재직근로자가 같은 근무기간 또는 같은 휴업기간에 대하여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당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체당금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체당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당금을 지급한다.
- ④ 재직근로자와 사업주의 기준, 체당금의 상한액, 그 밖에 체당금의 청구와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제7조"를 "제7조 및 제7조의2"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38조제2항"을 "제38조"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제7조"를 "제7조 및 제7조의2"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제7조"를 "제7조 및 제7조의2"로 한다.

제14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조 및 제7조의2제1항"을 각각 "제7조, 제7조의2 및 제7조의3제1항"으로 한다.

제17조 중 "제7조"를 "제7조 및 제7조의2"로 한다.

제19조제2호 중 "제7조제6항"을 "제7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7조의2"를 "제7조의3"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7조"를 "제7조 및 제7조의2" 로, "제7조의2"를 "제7조의3"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3년"을 "5년"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제7조"를 각각 "제7조 또는 제7조의2"로, "체당금 또는 제7조의2"를 각각 "체당금이나 제7조의3"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제7조"를 각각 "제7조 또는 제7조의2"로, "체당금 또는 제7조의2"를 각각 "체당금이나 제7조의3"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직근로자에 대한 체불 임금등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결정, 판 결 등이 있을 때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멸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발생한 징수금 징수권 또는 체당금·부담금 반환권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권리에 대하여는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경기 변동과	제1조(목적)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기업의 경영이 불안정하여, 임	
금등을 지급받지 <u>못하고 퇴직</u>	<u>못한</u>
<u>한</u> 근로자 등에게 그 지급을	
보장하는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체불 임금등의 지급) ①・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체
② (생 략)	<u>불 임금등의 지급)</u> ①·② (현
	행과 같음)
③ <u>근로자</u> 가 같은 근무기간 또	③ <u>퇴직한 근로자</u>
는 같은 휴업기간에 대하여 제	
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	
정에 따른 체당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체당금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제1항제4호에 따른 체당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당	
금을 지급한다.	

<신 설>

④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u>근로자</u>와 사업주의 기준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사업장 규모 등 고용노동부 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 는 <u>근로자</u>가 제1항에 따라 체 당금을 청구하는 경우 고용노 동부렁으로 정하는 공인노무사 로부터 체당금 청구서 작성, 사 실확인 등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u>근로자</u>가 제4항에 따라 공인노무사로부터 지원을 받은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 및 구체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한

④ 재직 중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체당금을 지급받은 근로
자가 퇴직 이후 같은 근무기간
또는 같은 휴업기간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체당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재직 중 제7조의2제1
항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을 공
제하고 제1항에 따른 체당금을
지급한다.
<u>⑤</u>
<u>퇴직한 근로자</u>
<u>⑥</u>
<u>퇴직한 근로자</u>
<u>.</u>
<u>⑦</u> <u>퇴직한</u>
근로자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⑦ (생략)

<신 설>

⑧ (현행 제7항과 같음)

제7조의2(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한 체불 임금등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7조제1항에 따라체당급을 지급한다.

- 1. 사업주와 근로계약이 종료되 지 아니한 근로자(이하 "재직 근로자"라 한다)일 것
- 2. 재직근로자의 임금이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 3. 사업주가 제7조제1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재직근로자에
 대한 체당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각 호의 금
- 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 제5호에 따른 임금

액은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

2.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 른 휴업수당

<u>제7조의2(</u>체불 임금등의 사업주 <u>조</u> 융자) (생 략)

제8조(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의 지대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 7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등을 청구할수 있는 권리를 대위(代位)한다.

③ 재직근로자가 같은 근무기
간 또는 같은 휴업기간에 대하
여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당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같은 항 제4
호에 따른 체당금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체당금을 지급받은 때에
는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
정에 따른 체당금을 지급한다.
④ 재직근로자와 사업주의 기
준, 체당금의 상한액, 그 밖에
체당금의 청구와 지급 등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세7조의3(체불 임금등의 사업주
융자) (현행 제7조의2와 같음)
세8조(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의
대위) ① <u>제</u>
7조 및 제7조의2

- ② 「근로기준법」 <u>제38조제2</u> <u>항</u>에 따른 임금채권 우선변제 권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퇴직 급여등 채권 우선변제권은 제1 항에 따라 대위되는 권리에 존 속한다.
- 제9조(사업주의 부담금) ① 고용 노동부장관은 <u>제7조</u>에 따라 미 지급 임금등을 대신 지급하는 데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 여 사업주로부터 부담금을 징 수한다.

② ~ ⑤ (생 략)

제13조(재산목록의 제출명령)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u>제7조</u>에 따라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주에게 재산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의 제출을 명할수 있다.

② (생략)

제14조(부당이득의 환수) ① 고용 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

	 ② <u>利38圣</u>
제	9조(사업주의 부담금) ① <u>제7조 및 제7조의2</u>
제	
제	

- 의 부정한 방법으로 <u>제7조 및</u> <u>제7조의2제1항</u>에 따라 체당금 또는 융자금을 받으려 한 자에 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신청한 체당금 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 급 또는 융자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 및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체당금 또는 융자금을 이미 받은 자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체당금 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 1. 2. (생략)
- ③ ④ (생 략)
- 제17조(기금의 설치) 고용노동부 저 장관은 <u>제7조</u>에 따른 체당금의 지급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채권보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u>제7조, 제7</u>
조의2 및 제7조의3제1항
,
②제7조, 제
7조의2 및 제7조의3제1항
 1.·2.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세17조(기금의 설치)
<u>제7조 및 제7조의2</u>
 세19조(기금의 용도)
•

- 1. (생략)
- 제7조제6항에 따른 공인노무
 사 조력 비용 지원
- 3. <u>제7조의2</u>에 따른 체불 임금등 지급을 위한 사업주 융자4. ~ 8. (생 략)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 조요청)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체불 임금등의 지급, 제7조의2에 따른 체불 임 금등의 사업주 융자, 제8조에 따른 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 의 대위, 제14조에 따른 부당이 득의 환수 등 이 법에 따른 업 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료의 제공 또는 관계 전산망의 이용(이하 "자료제공등"이라 한 다)을 해당 각 호의 자에게 각 각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 료제공등을 요청받은 자는 정 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1. ~ 11. (생략)
- ②・③ (생 략)

제26조(소멸시효) ① 부담금이나

1. (1000年日)
2. 제7조제7항
<u> </u>
3. 제7조의3
0. <u>M12290</u>
4. ~ 8. (현행과 같음)
, _ , .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
조요청) ①
元录(A) (D
제7조 및 제7조의2
<u>제7조의3</u>
•
1. ~ 11. (현행과 같음)
. — . , —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26조(소멸시효) ①

1 (청채고 가스)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체당금·부담금을 반환받을 권리는 <u>3년</u>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② • ③ (생 략)

- 제2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 저는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u>제7조</u>에 따른 <u>체당금</u>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융자를 받은 자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제7조에 따른 체당금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융자를 받은 자
 - 3. (생략)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부당하게 <u>제7조</u>에 따른 <u>체당</u> 금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융

<u>5년</u>
②・③ (현행과 같음)
세28조(벌칙) ①
1
<u>제7조 또는 제7조의2</u> -
<u>체당금이나 제7조의3</u>
2
<u>제7조 또는 제7조의2</u>
체당금이나 제7조의3
3. (현행과 같음)
2
1 <u>제7조 또는 제7조</u>
의2체당금이나 제7조의3

자